

CHURCH  
PASTOR  
+ TAX



P-TAX

#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안내 (2025년 ver.)

##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

연말정산 간소화,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원할

**연말정산 간소화**  
(공제자료 조회/발급)

바로가기



원할

**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**

바로가기



원할

**홈택스**

바로가기

###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

- 연말정산 서비스는 1.15.(수) ~ 1.20.(월)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.21.(화)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.20.(월),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(스크래핑)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홈택스  
**HomeTax**  
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\* 회원가입 없이 공동-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로그인 안내
간편인증 자세히보기
자주묻는 질문

로그인

성명

주민등록번호  -

공동-금융인증서 로그인

간편인증 로그인

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✓ 전체 동의

개인정보 수집-이용 동의(필수) 자세히보기 >

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(필수) 자세히보기 >

\*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법령보기 >

## [순서]

- ① 홈택스(hometax.go.kr) 임시페이지 화면 중 좌측 <연말정산 간소화> 바로가기 버튼 클릭
- ②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<전체 동의> 클릭 → 홈택스 로그인

## 연말정산간소화

\*\*\* 님

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**몇가지**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[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](#)  
(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)

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

0명

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[일괄제공 조회/취소 이동](#)[일괄제공 서비스 안내](#)

## ○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.

-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- 부양가족의 **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**을 초과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20세 이상 자녀라도 요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료비,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**나이와 소득 제한없이**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○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올해 많이 변경되는 사항은 FAQ를 참고해 보세요.

[연말정산간소화 FAQ](#)

[순서]

③ &lt;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&gt; 버튼 클릭

##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간소화자료 제출 | 예상세액 계산 | 공제신고서 작성

귀속년도 **2024년**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월 해제 **한번에 조회하기**

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

내려받을,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 공개안함  공개함

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 설정안함  설정함

**내려받기** 인쇄하기 점자받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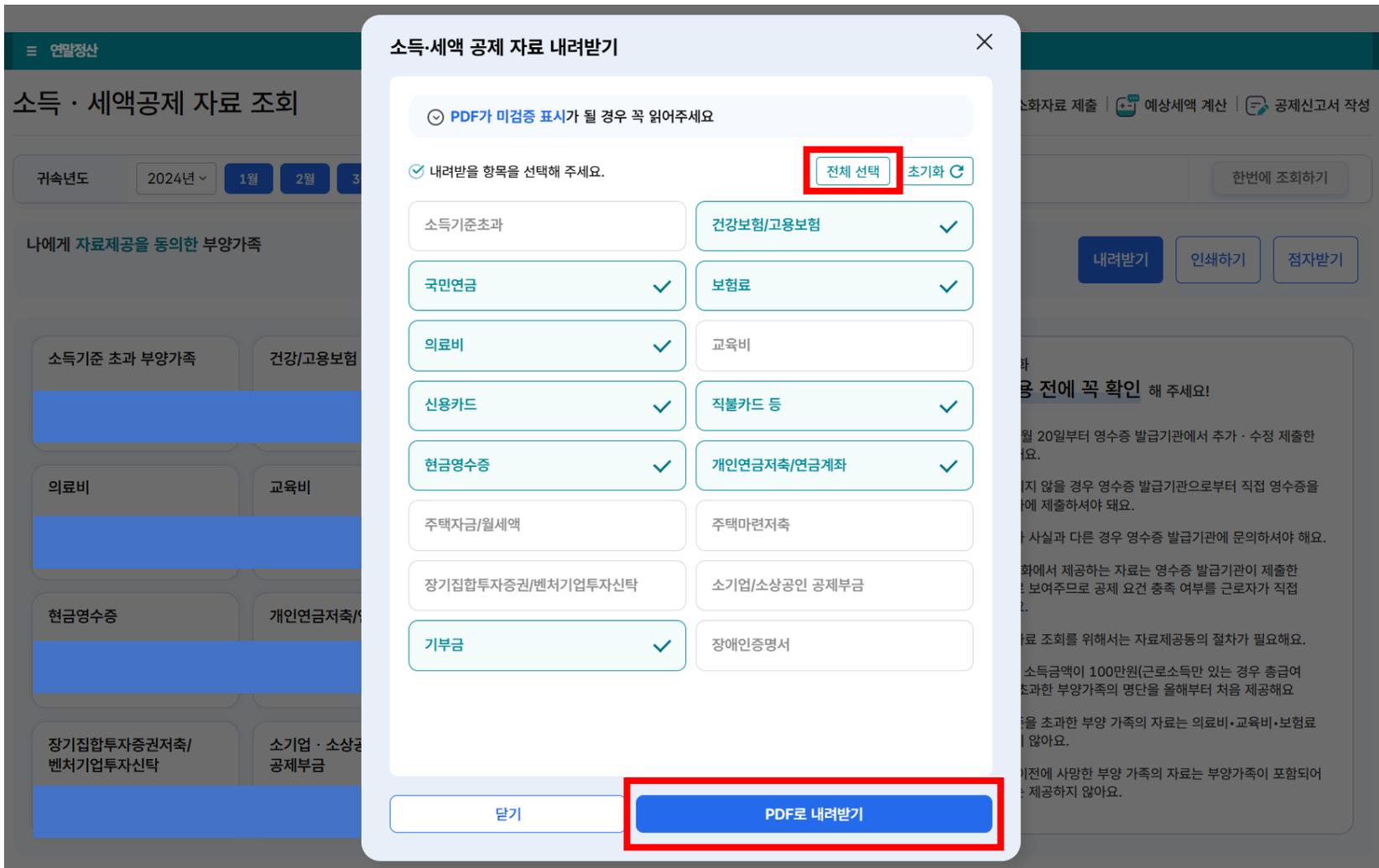
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조회하기 Q	건강/고용보험 조회하기 Q	국민연금 조회하기 Q	보험료 조회하기 Q
의료비 조회하기 Q	교육비 조회하기 Q	신용카드 조회하기 Q	직불카드 등 조회하기 Q
현금영수증 조회하기 Q	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 조회하기 Q	주택자금/월세액 조회하기 Q	주택마련저축 조회하기 Q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/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하기 Q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하기 Q	기부금 조회하기 Q	장애인증명서 조회하기 Q

**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** 해 주세요!

-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·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.
-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.
-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.
-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.
-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.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
-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외에 제공하지 않아요.
- '23.12.31.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는 제공하지 않아요.

[순서]

- ④ 귀속년도 **2024년** / 개인정보 **공개함** / 비밀번호 **설정안함** 체크
- ⑤ **한번에 조회하기** 클릭 → **내려받기** 클릭



[순서]

⑥ <전체 선택> 클릭 → <PDF로 내려받기> 클릭해서 PDF 파일 저장하기

\*\*\* 위 이미지와 다른 항목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.

## <부양가족 요건>

**\*\*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한 이후 부양가족 신청을 진행하세요.**

-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
- 의료비,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(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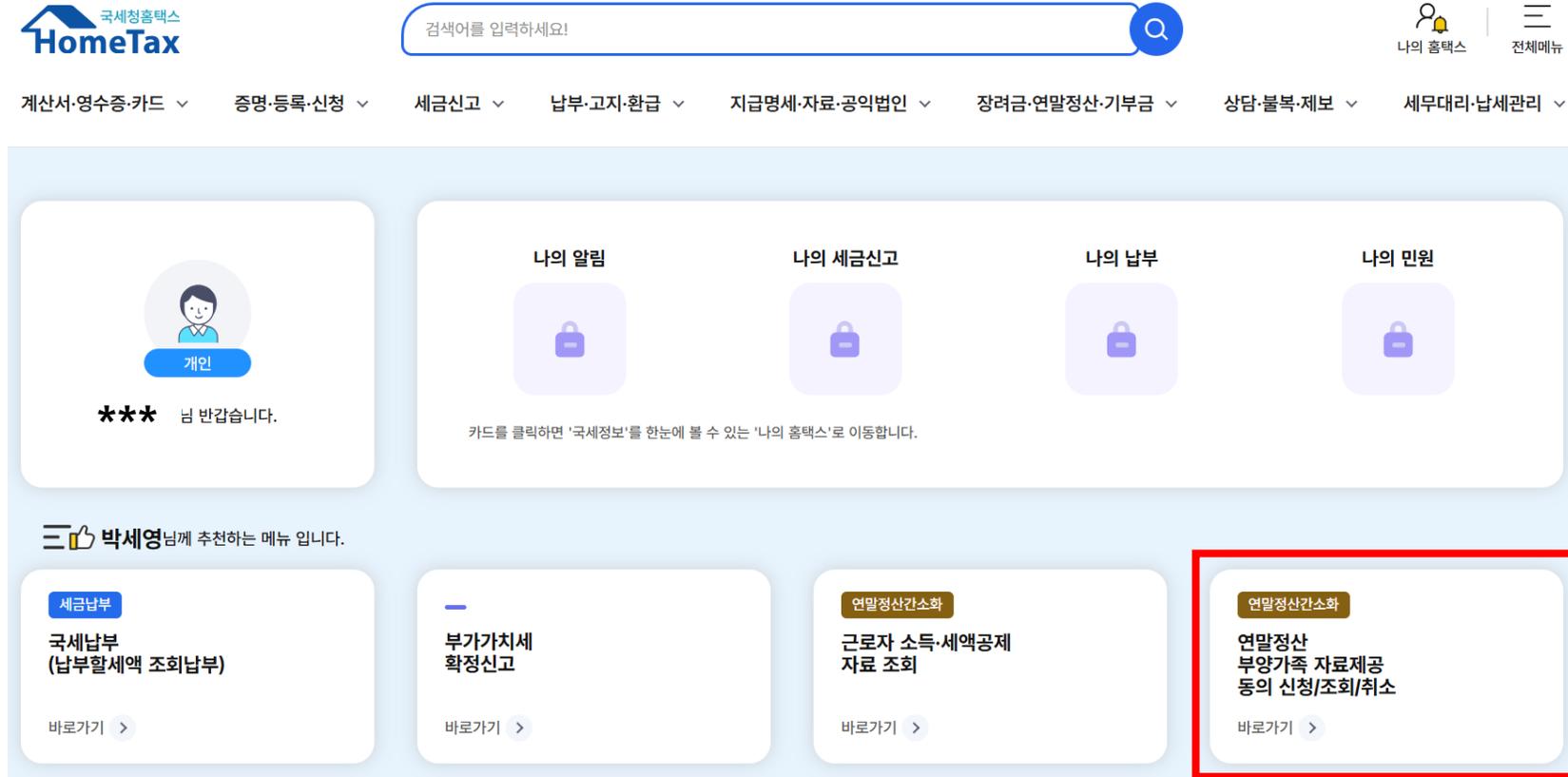
### ① 소득 요건

- 부양가족의 **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**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
- **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 500만 원 이하**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

### ② 나이 요건

-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,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
- **20세 이상의 자녀**라도 요건에 따라 **교육비 공제**는 받을 수 있음

# <부양가족 등록>



[순서]

- ① 홈택스 로그인 후 <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/조회/취소> 클릭

# <부양가족 등록>

##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
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자료제공동의 신청	제공동의 현황 조회	제공동의 진행상황 (팩스신청, 온라인신청)	제공동의 취소 신청
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\*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(자료제공자)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.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.  
※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[미성년자녀 신청]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.

 본인인증 신청 자세히 보기	 미성년자녀 신청 자세히 보기	 온라인 신청 자세히 보기	 팩스 신청 자세히 보기	 세무서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
--	--	---	--	---

○ 자료 조회자 (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- 근로소득자)

*성명 	조회자 성명을 입력하세요	*주민등록번호	앞자리 6자리 -	뒷자리 7자리 
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	---

○ 자료 제공자 (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-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)

*성명 	제공자 성명을 입력하세요	*주민등록번호	앞자리 6자리 -	뒷자리 7자리 
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	---

\*자료제공자와 조회자와의 관계  
은(는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선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

동의범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4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터 이후연도 자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

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(가) 조회함에 동의합니다.

신청하기

[순서]

- ② <본인인증 신청> 클릭 → 자료 조회자(본인) 및 자료 제공자(부양가족)의 개인정보 입력
- ③ 자료 조회 동의 체크박스 클릭 → <신청하기> 클릭

## <부양가족 등록>

###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

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자료제공동의 신청

제공동의 현황 조회

제공동의 진행상황  
(팩스신청, 온라인신청)

제공동의 취소 신청

\*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(자료제공자)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.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.  
※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[미성년자녀 신청]을 선택하여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 주세요.



본인인증 신청

자세히 보기



미성년자녀 신청

자세히 보기



온라인 신청

자세히 보기



팩스 신청

자세히 보기



세무서방문 신청

자세히 보기

#### 본인인증 신청



자료제공자(부양가족) 명의의 인증서, 신용카드, 아이폰, 휴대폰이 있는 경우

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.

[인증서]

-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

-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**부양가족(자료 제공자)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**  
→ 위 이미지 내 **본인인증**은 근로자가 아니라 **부양가족(부모님 등) 명의의 인증서** 등을 말함
-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**[미성년자녀 신청]**을 선택  
→ **자료 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인증서**로 자료 제공동의 신청하면 됨